

2025년(1월~4월) 재활용품(고철류)
공개매각(단가계약)

과 업 지 시 서

2024. 12.

 파 주 시
파주시 환경관리센터
환경에너지솔루션(주)

2025년(1월~4월) 재활용품(고철류) 매각(단가계약)

과 업 지 시 서

1. 과업의 개요

가. 과업의 목적

- 본 재활용품 매각 단가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, 영원환경(주), (주)이룸, (주)진환경, (주)더조은환경, (주)파주환경공사, (주)하나환경, (주)한빛환경, (주)늘푸른환경, (주)엠에스환경, 용금건설, (주)푸른솔, (주)세아환경, (주)클린환경 등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대행업체 등(이하 “청소대행업체”라 한다)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에 대하여 적정 처리업체에 판매함에 그 목적이 있음.

나. 과업의 내용

- 과 업 명 : 2025년도(1월~4월) 재활용품(고철류) 매각
- 과업기간 : 2025. 1. 1. ~ 2025. 4. 30.까지로 한다.
 - ※ 매각되는 재활용품이 예상 발생량보다 미달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 된 것으로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- (단, 계약 종료일까지 다음 계약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신규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)

다. 입찰 참가자격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한 자격을 갖추고, 같은 법 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

라. 용어의 정의

- 본 과업을 발주하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운영사인 환경에너지솔루션(주)를 “발주자”라 하고 과업을 수탁받은 개인·법인 등을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.
- 본 과업에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, 「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·운영 조

례」 및 관련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다. 과업의 범위

- 재활용품 수거 장소 :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 및 각 청소대행업체.
- 수거 주기 : 재활용품은 주 2회 이상 재활용품 수거장소에서 직접 상차 인수한다.
 - ※ 매각 예정량 및 매각 예정금액에 미달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2. 과업 수행기준

가. 계량 및 검수

- 판매물량에 대한 계량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지정 계량대를 이용한다.
 - ※ 단, 지정 계량대 고장시 검인받은 계량소에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계량하여, 계량표를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계량시 계량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출할 경우 무단반출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.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.
- 계량카드에 의한 계량 후 직원에게 재활용품 확인 및 계량증명서를 발부 받지 않고 반출시에는 무단반출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민.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.

나. 계약 업무 미이행에 대한 조치

- 판매물량 전표는 매월 5일까지 제출하고, 재활용품 매각대금 결제는 판매물량에 대하여 매달 파주시청 입금 계좌에 고지서 납부일 까지 입금하여야 한다.
(파주시에서 세입금 총괄 관리를 하여 체납시 행정기관 조치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)
- 고지서 발행 후 대금 연체(1개월 이상)가 있을 시 계약이행증권으로 대체하며,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.
- 수 회의 계약업무 미이행(상차 미이행 및 연락 두절)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.

계약 불이행 횟수	1회	2회	3회 이상
조치 내용	주의	경고	계약 해지 및 입찰참여 제한

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

다. 수거 운반

- 계약상대자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, 및 각 청소대행업체에 선별 보관중인 재활용품을 직접 상차하여 운송하여야 하며, 재활용품 운반계획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각 품목의 운반에 대하여 필요시 암롤박스 등은 각 품목 계약상대자에서 제공하여야 한다.
- 수거운반 주기를 절대 준수하고 수거하지 못할 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발주자 및 각 청소대행업체는 계약상대자에 재활용품 수거(반출)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각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요구가 있을 시 48시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파손 제품 중 재활용 가능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를 하여야 한다.

3. 기타 사항

- 가.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『제28조 폐기물처리업 허가』 또는 『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』를 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여야 한다.
- 나. 관련 법령에 따른 허용보관량,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인허가 변경 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에 따른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·의무에 대하여 양도, 담보제공, 하도급 등 권리·의무를 설정할 수 없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재활용대상품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인원 및 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사고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바. 발주처는 본 계약과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 시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사. 계약의 종료후에는 사용했던 계량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- 아.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계약상대자에 자료나 서류·장부 등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자.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.